

『희망키움통장』 특약 개정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18. 2. 1

2. 개정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『희망키움통장』 특약	『희망키움통장』 특약	
<p>제 1 조 적용범위 (내용생략)</p> <p>제 2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<u>지방자치단체, 중앙자활센터, “운영 지침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(이하 “고객”이라 함)을 대상으로 합니다.</u></p> <p>제 3 조 예금과목 . (내용생략)</p> <p>제 4 조 약정기간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고객은 36개월, <u>중앙자활센터 및 지방자치단체는 38개월로 합니다.</u></p> <p>제 5 조 최소가입금액 이 예금의 <u>최소가입금액은</u> 고객은 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지정하며(<u>추후 변경 불가</u>), <u>지방자치단체와 중앙자활센터는 0원 이상 원단위로 신규합니다.</u></p> <p>제 6 조 불입 및 적립방법 고객은 매월 1회, 일정일(전월 23일부터 해당월 22일까지로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)에 한해 <u>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(5만원 또는 10만원)만</u> 입금 할 수 있습니다. 단, <u>지방자치단체와 중앙자활센터는</u> 적립금액 및 적립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근로소득장려금, 정부지원금, 민간 매칭금(이하 “적립금”이라 함)을 입금 할 수 있습니다.</p>	<p>제 1 조 적용범위 좌동</p> <p>제 2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<u>중앙자활센터 및 ‘운영 지침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(이하 “고객”이라 함)을 대상으로 합니다.</u></p> <p>제 3 조 예금과목 (좌동)</p> <p>제 4 조 약정기간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고객은 36개월, <u>중앙자활센터 60개월로 합니다.(단, 중앙자활센터의 약정기간은 개정시행일 이후에 신규 계좌부터 적용함)</u></p> <p>제 5 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<u>가입금액은</u> 고객은 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지정하며, <u>중앙자활센터는 0원 이상 원단위로 신규합니다. (단, 고객의 가입금액은 중앙자활센터가 은행에 변경 승인을 통지한 경우 변경 가능함)</u></p> <p>제 6 조 불입 및 적립방법 고객은 매월 1회, 일정일(전월 23일부터 해당월 22일까지로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)에 한해 <u>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 또는 제5조에 의거 금액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금액만</u> 입금 할 수 있습니다. 단, <u>중앙자활센터는</u> 적립금액 및 적립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근로소득장려금, 정부지원금, 민간 매칭금(이하 “적립금”이라 함)을 입금 할 수 있습니다.</p>	<p>‘2018자활사업안내(II)희망·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’ (이하 ‘운영지침’ 이라 함) 변경 내용 반영</p> <p>정부지원금 가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자활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가입대상 중 지방자치단체 문구 삭제 (운영지침 3p, 21p)</p> <p>지방자치단체 문구 삭제. 중앙자활센터 예금 약정기간 변경 (운영지침 21p)</p> <p>최초가입금액을 가입금액으로 문구 수정. 지방자치단체 문구 삭제 및 고객 최초 가입금액 변경 가능 문구 추가 (운영지침 7p)</p> <p>(5조 변경 반영) 고객가입금액 변경된 경우 불입 가능 내용 추가</p> <p>지방자치단체 문구 삭제</p>

<p>제 7 조 적립금 지원대상 (내용생략)</p> <p>제 8 조 적립금 지원금액</p> <p>① <u>지방자치단체가</u> 적립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은 운영 지침에 따라 산출되며,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적립하여 고객이 “운영 지침”의 요건 충족 시 일괄 지급합니다.</p> <p>② (내용생략).</p> <p>제 9 조 불입 및 적립중지 (내용생략)</p> <p>제 10 조 우대금리 (내용생략)</p> <p>제 11 조 해지방법</p> <p>① 고객은 <u>지방자치단체에 희망키움통장 해지신청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“운영지침”의 해지 사유에 따라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② <u>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은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 시 지급되며, 중앙자활센터가 지급하는 민간 매칭금은 매월 5일(근로소득장려금 해지일 전월 21일~당월 3일인 경우)과 매월 20일(근로소득장려금 해지일 당월 6일~당월 18일인 경우) 고객이 지정한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계좌로 지급됩니다.</u> <u>단, 5일과 20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해지가 가능하며, 민간매칭금 해지 당일 및 전영업일에는 근로소득장려금 해지가 불가능합니다.</u></p> <p>제 12 조 이자 지급방법 (내용생략)</p> <p>제 13 조 적립금 지원조건</p> <p>① 이 예금이 해지되는 경우, 적립금은 “운영 지침”에 따라 <u>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에게 지급됩니다.</u></p>	<p>제 7 조 적립금 지원대상 (좌동)</p> <p>제 8 조 적립금 지원금액</p> <p>① <u>중앙자활센터가</u> 적립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은 운영 지침에 따라 산출되며, 중앙자활센터는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적립하여 고객이 “운영 지침”의 요건 충족 시 일괄 지급합니다.</p> <p>② (좌동).</p> <p>제 9 조 불입 및 적립중지 (좌동)</p> <p>제 10 조 우대금리 (좌동)</p> <p>제 11 조 해지방법</p> <p>① 고객은 <u>“운영지침”에 명시한 기관에 희망키움통장 해지신청을 하고 중앙자활센터가 “운영지침”의 해지 사유에 따라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② <u>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은 제1항의 해지 승인에 근거하여 중앙자활센터에서 해지 요청시 ‘운영지침’의 요건에 따라 해지합니다.</u></p> <p>제 12 조 이자 지급방법 (좌동)</p> <p>제 13 조 적립금 지원조건</p> <p>① 이 예금이 해지되는 경우, 적립금은 “운영 지침”에 따라 <u>중앙자활센터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에게 지급됩니다.</u></p>	<p>(2조 변경 반영)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자활센터로 변경</p> <p>해지신청 기관에 대해 ‘운영 지침’에 명시한 기관으로 문구 수정. (2조 변경 반영) 해지승인통보에 대해 중앙자활센터로 변경</p> <p>(2조 변경 반영)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자활센터로 변경 민간매칭금 지급방법 문구 수정</p> <p>(2조 변경 반영)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자활센터로 변경</p>
---	--	--

<p>② 고객은 적립금을 “운영 지침”에서 명시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, 그 증빙자료를 <u>지방자치단체</u>에 적립금 지급 요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</p> <p>제 14 조 양도 및 담보제공의 제한 (내용생략)</p> <p>제 15 조 부가서비스 (내용생략)</p> <p>제 16조 기타 (내용생략)</p>	<p>② 고객은 적립금을 “운영 지침”에서 명시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, 그 증빙자료를 <u>‘운영 지침’에 명시한 기관</u>에 적립금 지급 요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</p> <p>제 14 조 양도 및 담보제공의 제한 (좌동).</p> <p>제 15 조 부가서비스 (좌동)</p> <p>제 16조 기타 (좌동)</p>	<p>증빙자료 제출 기관에 대해 ‘운영지침’에 명시한 기관으로 문구 수정</p>
--	--	--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